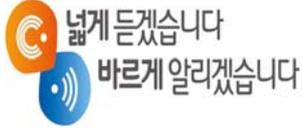


 국토교통부 <small>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</small>	보 도 자 료		
	배포 일시	2013. 12. 24(화) 총 4매(본문 2, 붙임 2)	
담당 부서	녹색건축과	담당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김성호, 사무관 박기범, 주무관 양승 • ☎ (044)201-3768, 3769, 3774
보 도 일 시		2013년 12월 26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25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"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모집합니다!"

내년 정부 사업에 참여...건축·설비·에너지·금융 분야 가능

- 국토교통부(장관 서승환)와 한국시설안전공단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건축물의 단열개선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27일(금)부터 모집한다.
- 내년부터 여름과 겨울철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 극복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전망이다.
- 그린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단열개선 등을 통하여 에너지 성능을 20% 이상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며, 이번에 모집하는 사업자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게 된다.
- 국토부는 '14년부터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 설계비와 시공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과 민간 부문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*을 추진할 예정이다.
- * 건축주는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절감되는 에너지 금액 등을 토대로 사업비를 분할상환하며, 이자는 정부에서 에너지 성능개선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
- 국토부는 건축물 에너지정보를 공개하여 사업자들이 그린리모델링이 필요한 사업대상 건축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□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건축, 설비, 환경, 에너지 컨설팅, 금융, 부동산 개발 등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.

○ 이번에 등록된 사업자들은 예비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며, 1년 동안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최종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된다.

○ 향후 그린리모델링 시장이 68조원*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, 금번 등록으로 사업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.

*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를 20%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약 68조원의 그린리모델링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

□ 사업자 접수는 '13.12.27일부터 '14.1.17일까지 진행하며, 그린리모델링 운영위원회에서 접수된 사업계획서와 실적 등을 평가하여 '14.2.4(화)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.

○ 관심 있는 사업자는 12월30일에 개최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설명회*에 참석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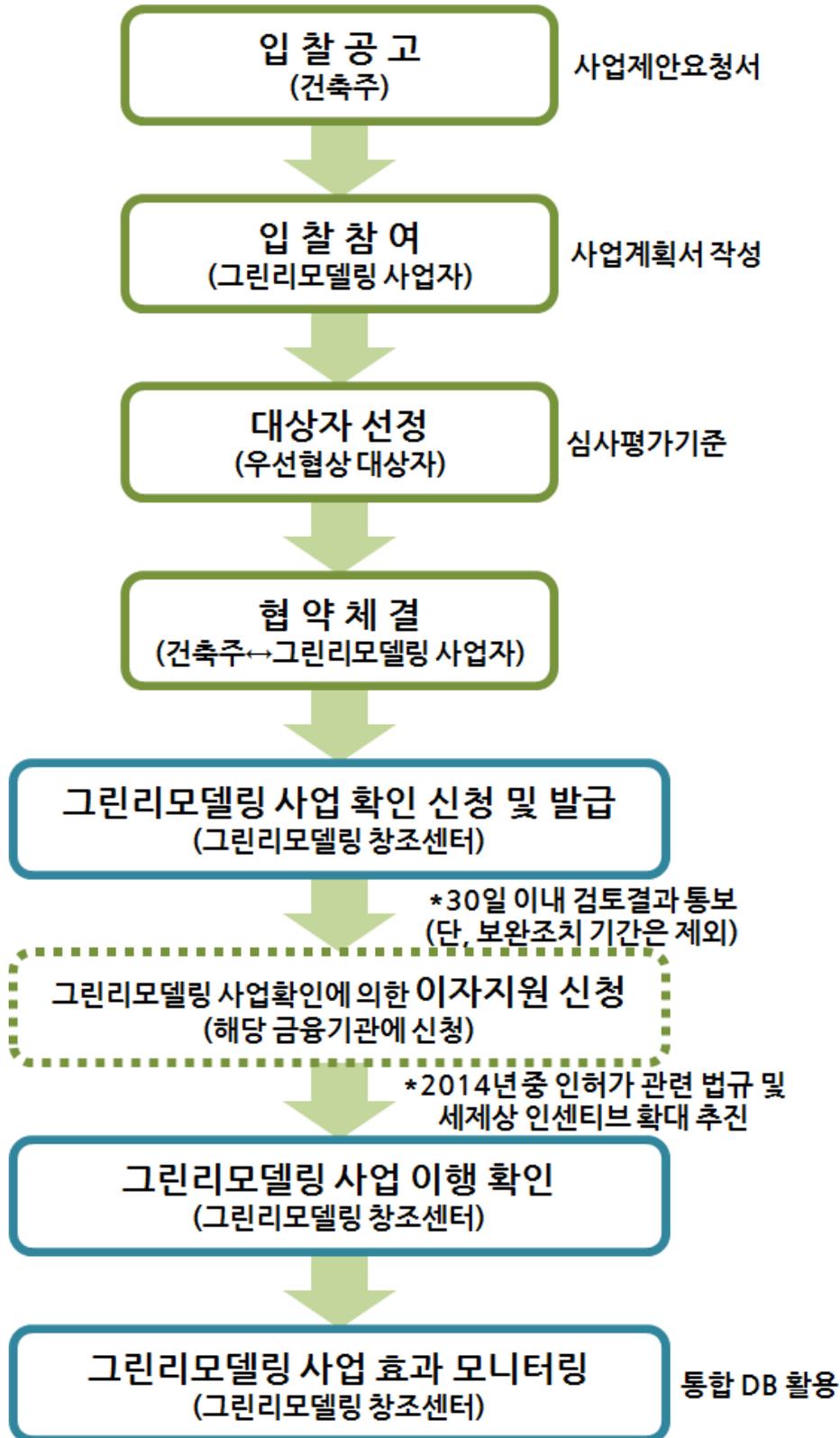
* '14.12.30(월), 14:00~18:00, 국토연구원 지하1층 대강당

사업자 등록관련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)와 그린투게더(www.greentogogether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신청서는 방문·우편(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407 KINTEX 제2전시장 오피스 1002호,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), e-mail(green@kistec.or.kr)로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(031-476-9778)에 접수하면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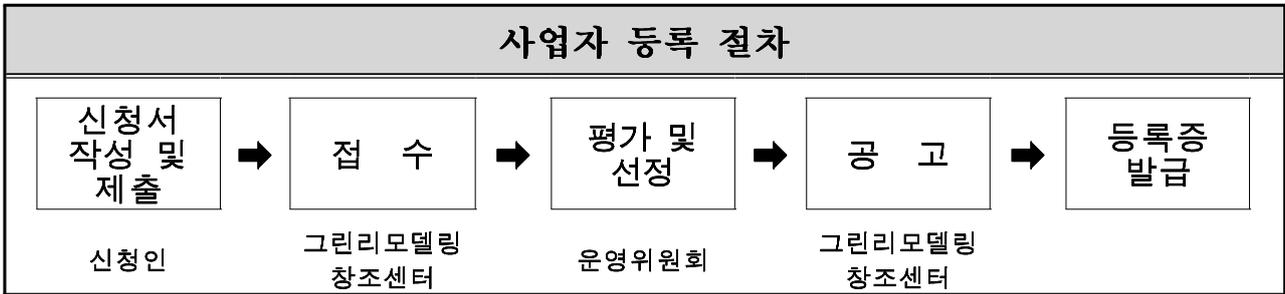
□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시켜 국가 에너지 위기 극복과 더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,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시킬 것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박기범 사무관, 양승 주무관(☎ 044-201-3769, 377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○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절차



○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요건

-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**종합사업자와 전문사업자로 구분함**
-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**일정기준 이상의 기술 인력, 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추어야 함**

구분	기술인력 (최소기준)	자본금		사무실 면적(㎡)
		법인	개인	
종합 그린리모델링사업자	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특급기술자 1명	2억원 이상	4억원 이상	분양면적 66㎡ 이상
전문 그린리모델링사업자	건축분야 중급기술자 1명	해당사항 없음		분양면적 33㎡ 이상

※ 기술인력 평가 : 건설기술인협회 또는 건축사협회의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심사
 자본금 입증서류 평가: 공인회계사 날인 서류 또는 감사보고서, 재무관리 진단보고서 사본
 사무실 입증서류 평가 : 건물등기부등본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

○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선정기준

구분	평가기준
평가점수	운영위원회의 사업계획서와 실적평가 총점이 70점 이상인자

※ 평가방법 : 운영위원 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함